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5. 3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6. 5

다. 상정일자 :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5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법률 제6234호(2000.1.28)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일반인의 이용의 제공”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있는 내용이 삭제되어 본조항을 삭제함.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함.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함.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는 2000. 1. 28 개정공포된 주차장법 제19조 내지 제19조의4항과 2000. 7. 27 개정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